전남소방본부, 관할 떠넘기다 골든타임 21분 날렸다

전남부지사 헬기에 태우려다 출동 시간 지체 목포해경, 선내대기 방송 알고도 중단 안시켜

감사원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 감사 결과는 정부 당국의 부실한 안전검사 와 운항 승인, 침몰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기관의 '부실 대응'이 맞물려 293명의 사망 자를 낸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충대충' 근무에 책임은 떠넘기고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감지했어야 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의 근무 태만을 지적했다. 사고 당시 2명이 아닌 1명만 근무한 탓에 사고가 일어 나고 16분이 지난 9시6분 목포해경의 통지 를 받고나서야 알게 됐다는 것으로 광주지 검은 이같은 점을 확인, 진도VTS 센터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도VTS는 또 9시7분부터 37분까지 30 분간 세월호와 단독으로 교신하는 동안 배안에서 승객이동이 곤란한 점등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음에도, 현장 구조요원이나 구조본부 등에 제대로 전달하지않는 등 업무 처리도 미숙했다. 사고 발생(오전 8시50분)부터 교신 종료까지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47분의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초 사고 신고 접수 기관들의 부실 대응 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사고발생 직후인 오전 8시52분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최초로 사고 발생신고를 받은 뒤 '해상사고는 해경 소관'이라는 이유로 21분을 흘려보낸 후에 야 소방헬기 출동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 인됐다. 〈광주일보 5월 1일자 1면〉

전남소방본부장은 또 전남도 행정부지 사를 헬기에 태우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10시 37분에야 헬기가 현장에 도 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일보 4월 30 일자 1면〉

감사원은 이외 목포122구조대가 오전 9 시가 조금 넘은 시각, 출동하고도 바로 옆 해경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513함(상황대 기함) 대신 버스와 어선을 타고 가느라 세 월호가 상당 부분 가라앉은 낮 12시13분에 서야 현장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513함에 탔다면 1시간을 더 당겨 오전 11시10분에 현장 도착이 가능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무능함 드러낸 구조활동=감사원은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각종 함정, 관제센터, 정부기관 등이 세월호나 승객 등과 통신을 주고받았지만 누구도 구조에 도움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의 '부실 대응'은 다시 한번 확인 됐다. 목포해경 123정은 세월호와의 교신에 실패했음에도 재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목포 해경은 오전 9시10분경 이준석 선장과 휴대전화 통화 2차례를 한 게 전부였다.

123정은 또 오전 9시3분 현장 도착 당시 에서 40분이 지난 43분에야 "승객이 안에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8일 오전 감사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감사진행상황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__ /연합뉴스

〈자료제공: 감사원〉

있는데 배가 기울어 못나오고 있다"고 처음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3정이 '세월호 400m 전방에서 승객 탈출안내 방송을 했다'고 하지만 헬기 소음 등으로 승객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 외 세월호 객실 승무원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은 뒤 '선내 대기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도 방송중단 등을 요구하지 않고 통신도 끝까지 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해경청과 해경청의 미숙한 초동 대 처 및 오판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서해해경 청은 오전 9시24분 세월호에서 진도VTS 를 통해 승객 비상탈출 여부를 문의했음에 도, 적절한 구조조치를 지시하는 대신 "선 장이 현장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라"고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본청은 또 오전 9시47분 123정의 "갑판과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보 고를 받고도 즉각적인 선실진입·승객퇴선 유도 등 기본적 지시조차 하지 않았고 세월 호가 100도 이상 기울어 좌현이 완전히 침 수된 후인 오전 10시 17분까지도 "여객선 자체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할 것"이 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 혀졌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사고 당일 시간대별 부실대응

■ 사고 당일 시간대별 부실대응			
	시간	내용	문제점
	08:50	세월호 급변침(08 : 48) 후 표류 사실을 진도VTS 관 제모니터상 포착가능	모니터링에 소홀해 인지못하다 16분 후(09: 06)에야 목포 해경 통보받고 사고 발생 인지
	08:55 ~09:27	세월호와 교신	직접 교신에 실패해 선장 등을 통한 갑판 집결, 승객 퇴 선 지시 기회 무산
	사고발생 ~9:50	세월호 내부 방송	7차례에 걸쳐 승객에게 "움직이지 말고 선내 대기" 방 송 지속
	08:58	제주해경, 제주VTS로부터 사고사실 신고접수	12분이 지난 오전 9시10분 함정 등 출동 지시
	08:52	전남소방본부, 단원고 학 생으로부터 최초 신고접수	해상사고는 '해경소관'이라는 이유로 오전 9시13분에 야 소방헬기 출동 지시. 이후 이 헬기를 전남도청으로 경유하도록 지시(10: 03)하고 전남 행정부지사와 동승 (10: 11)해 현장에 오전 10시37분 현장 도착
	09:03	목포해경 연안경비정 123 정 교신 실패	교신 실패하자 재교신 시도하지 않아 조난통신망으로 세월호가 2차례(09: 26~09: 28) 호출했는데도 청취 못함
	09:04	목포해경 승무원 신고 접수	선내상황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 승객 갑판 집결, 퇴선 유도 지시 등 초동조치 기회 날려
	09:10	목포해경, 선장과 통화	선장과 휴대전화 통화만 2차례 시도하고 직접 교신 방 안 강구 미비
	09:07 ~09:37	진도VTS, 세월호와 직접 교신	단독으로 교신하면서 승객 이동 곤란 등 선내 긴박한 상 황 파악하면서도 구조인력 및 구조본부 등에 전달 소홀
	09:16 ~11:19	목포해경 연안경비정 123 정 현장지휘 함정 지정	실질 구조인력 9명에 불과하고 위성통신장비 없어 사 고현장 영상송신 불가능 등 사고 대응능력 취약
	09:24	서해해경청의 승객 비상탈 출 여부 문의에 대한 대응	세월호에서 진도VTS를 통해 문의하자 서해해경청은 "선장이 현장 상황 판단해 결정하라"고만 대응하고 선 장 조치상황 파악이나 적절한 구조조치 지시 미비
	09:13	목포 122구조대 출동	해경 전용 부두의 513함 대신 버스로 팽목항으로이동 후 어선에 탑승해 낮 12시19분 현장 도착→513함 탑승 했으면 오전 11시10분 도착 가능
	09:30	123정 현장도착	갑판·해상에 승객 보이지 않아 승객 즉각 퇴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선실 진입이나 승객 퇴선 유도 등 조치 없이 소극대응. 이후 오전 9시37분에야 해경본청에 상황보고.
	09:35	서해해경청 특공대 출동명 령 접수	출동 명령 받고 목포항 이동했으나 가용선박 없어 오전 10시25분 전남경찰청 헬기로 출동해 오전 11시28분 현 장도착→출동명령 직후 전남경찰청 헬기 탔으면 오전 10시45분 도착가능
	09:37	해경본청, 대다수 승객 선 내대기 상황 파악	선실 내부진입, 승객 퇴선유도 등 지시하지 않음
	09:43	서해해경청, 목포해경, 대 다수 승객 선내대기 상황 파악	선실 내부진입, 승객 퇴선유도 등 지시하지 않음
	09:48	123정 선장 및 선원 구조	구조 선원 중 2등 항해사가 소지한 무전기로 승객 퇴선 유도 방송이 가능했지만 활용하지 않음
	10:17	세월호 100도 이상 전복	해경본청은 "여객선 자체 부력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 할 것"이라고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지시 시달
			/TL근데고ㆍ가니의

뜰 수 없는 배, 서류 조작···항만청은 운항 허가

40명 문책·11명 수사 요청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해운 및 세월호 선원들의 무리한 선박운항 및 무책임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먹구구식' 허술한 대응도 상당부분 작용했다. 이번 감사는 특히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을 감사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의미가 있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안전 핵심요소 조작된 채 운항승인 =우선 세월호는 애초 사고가 발생한 인 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수 없는 배였던 것 이 이번 감사결과 확인됐다. 운항 승인 자 체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부실업무 때 문에 이뤄진 것이 감사결과 밝혀진 것.

감사원에 따르면 선박 증선은 해당 항로의 평균운송수입률이 25% 이상 유지될때에만 인가가 가능하지만 인천항만청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정원과 재화중량을 변조해 제출한 계약서에 근거해 2011년 9월 증선계획을 가(假)인가 했다.

세월호의 본래 여객정원은 804명에 재화중량이 3981t이어서 평균 운송수입률이

24.3%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객정원 750명에 재화중량 3000t(평균운송수입률 26.9%)으로 위조해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후 2012년 9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 증축으로 인해 여객정원이 921명으로 늘고 재화중량도 3794t으로 변동돼 운송수 입률이 24.2%로 더욱 떨어졌는데도 인천 항만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난해 3월 증선을 최종인가했다.

◇한국선급 복원성 등 선박검사·해경 운항관리규정 승인도 부절적=한국선급 의 복원성 검사 등도 부실 덩어리였다. 지 난해 1월 한국선급은 복원성 계산의 기초 가 되는 선박의 경하중량(선박 자체 무게) 및 무게중심을 산출하기 위한 경사시험 (선박의 잠김 깊이와 중량물 위치에 따른 기울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면서 증축 설계업체가 경하중량을 100t이나 적게 산 정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경사시 험 결과보고서를 승인했다.

특히 경사시험에서 배의 무게중심이 당 초 추정치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복원성이 나쁘게 나오자 설계업체가 컨테이너 단위무게를 조정해 화물무게를 줄였는데도 한국선급은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오류나 부당한 부분을 반영해 재계산을 해보니 풍압경사각(초속 26m 풍속에서 최대한 옆으로 기울어지는 각도)이나 선회경사각(최고속력으로 선회할 때 옆으로 기울어지는 각도)이보에서 기준은 동과한 거으로 드러나다

해경의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도 향응에 얼룩져 있었다. 감사결과 인천해경 직원 3명은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나흘 전 세월호의 '쌍둥이배'인 오하마나호를 무상으로 타고 제주도로 건너간 뒤사흘간 현지에서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교통편의, 식대, 주류, 관광 등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들은 청해진해운이 심사 필수서 류인 선박복원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사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 음에도 그대로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해줬 다. 그 결과 세월호는 화물적재중량과 차 량적재대수가 승인치보다 각각 169t, 51t 을 초과한 운항관리규정으로 운항을 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운조합 역시 세월호가 사고 당일 출항 하기 전 화물중량, 적정 차량대수, 고박상 태 등을 점검·확인하지 않았고, 적재화물 량은 승무원의 말만 믿은채 실제 적재량 (검찰추정치) 2142t의 3분의 1수준인 657t 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또 최대 12대를 적 재할 수 있는 세월호 중갑판에 차량 30대 가 실리고, 컨테이너는 전용고박장치 없 이 밧줄로만 묶여 있었는데도 제대로 점검 하지 않은 채 출항허가를 내렸다고 감사원 은 밝혔다.

◇감사원 "관련자 40여명 징계 등 조치 검토" = 감사원은 사고 발생시 초동대응 미숙과 상황전파 혼선 등 정부 불신을 초 대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여 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 문책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향응수수 등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11명을 이미 수사 요청했고, 수사 참고자료도 검찰에 제공했 다. /연합뉴스



